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3. 12.
행정재무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2월 2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7.3.12)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96.12.6)으로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되어 동 조례에서 정한 기구(직제)의 분장사무와 직위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부위원장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위원에 총무국장을 추가하여 구성함(안 제3조제3항)
- 간사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위명칭 변경(안 제5조제3항)

3.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전문위원 : 허 영 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총무국장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간사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96.12.6. 조례 제349호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청의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됨에 따라 동위원회도 분장사무와 직위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의 기구 신설 및 개편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라 생각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 査 結 果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
----------	-----

제출년월일 : 1997. 2. 18.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1996. 12. 6)으로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되어 동 조례에서 정한 기구(직제)의 분장사무와 직위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부위원장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안, 제3조 제2항)
-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에 총무국장을 추가하여 구성함(안, 제3조 제3항)
- 간사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위명칭 변경(안, 제5조 제3항)

3. 개정근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96. 12. 6. 조례 제349호)

4. 참고사항

- 합 의 사 항 : 없음
- 예 산 조 치 : 필요없음
- 개정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사업주관과장”을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사업주관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조 (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 (기능) (생략)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3조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u>총무국장</u> 으로 한다. ③ 위원은 <u>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사업주관과장</u>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민자유치관련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u>기획실장</u> 으로 한다. ③ 위원은 <u>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사업주관담당관·과장</u>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기획예산과장</u> 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기획예산담당관</u> 이 된다.
제6조 ~ 제9조 (생략)	제6조 ~ 제9조 (현행과 같음)